

포춘 민사소송법, p. 172, 수정

判例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의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대판 1994.02.25. 93다39225 등).”라고 하고, “부기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2000.04.11. 2000다5640 등).”고 하여 이런 경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소각하설). 그리고 判例는 과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¹⁾(대판 2000.04.11. 99다23888).”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判例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전합) 2025.10.23. 2021다252977).”라고 하여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판(전합) 2022.11.24. 2018두67).

포춘 민사소송법, p. 175, 수정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직무상의 당사자(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명문○	명문X
병행형	같음형			
① 채권자대위 소송의 채권자 ② 주주대표 소송의 주주 ③ 채권질의 질권자 ④ 공유자전원을 위해 보존해위를 하는 공유자 ⑤ <u>채권추심명령을</u>	① 파산관재인 ② 회생회사 관리인 ③ <u>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u> ④ 상속재산관리인 ⑤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 유언집행자 ⑥ 주한미군에	① 가시소송에서 피고 적격자가 사망한 뒤의 검사 ② 해양사고구조료 청구에서의 선장	① 선정당사자(제53조) ② 추심위임 배서에 의한 피 배서인(어음법 제18조) ③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의 대표당사자 (동법 제2조 1항) 2. 소비자단체 소송에서의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70조)

165)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이하 ‘불가분채무자 등’이라 한다)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채무자 등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추심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3.10.31. 2011다98426).

받은 압류채권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군측을 위해 나서는 국가			
----------	-------------------------------	--	--	--

포춘 민사소송법, p. 252, 수정

각주 261)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해 피고(제3채무자)는 대여금채권이 압류·전부 또는 압류·추심 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즉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피고(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송달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이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본안에 관한 항변사유이고,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원고(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는 소각하의 본안전 항변사유이다. 하지만 대여금채권이 단순히 압류·가압류 되었음을 들어 항변할 수는 없다(대판 2000.04.11. 99다23888).

포춘 민사소송법, p. 291, 수정

⑧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니.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마친다. 한편,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피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치분을 한때에는 사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걸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9.07.25. 2019다212945). **삭제**

